

소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
부천시 소사구 190-3번지 소재 '소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'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변경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6월 23일

부 천 시 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소규모재건축사업)

나. 명 칭 : 소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 :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90-3

나. 면 적 : 3,436.50㎡

3. 사업의 착수 예정일(착공) 및 준공 예정일

가. 착 수 예 정 일 : 미정

나. 준 공 예 정 일 : 미정
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가. 조 합 명 칭 : 소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(조합장 이양희)

나. 사 무 실 소 재 지 :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190-3번지 소라아파트 관리사무실

5. 조합설립인가 변경 내용

○ 정관변경

-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·공고 방법(제7조) 등 26개

6. 지형도면에 관한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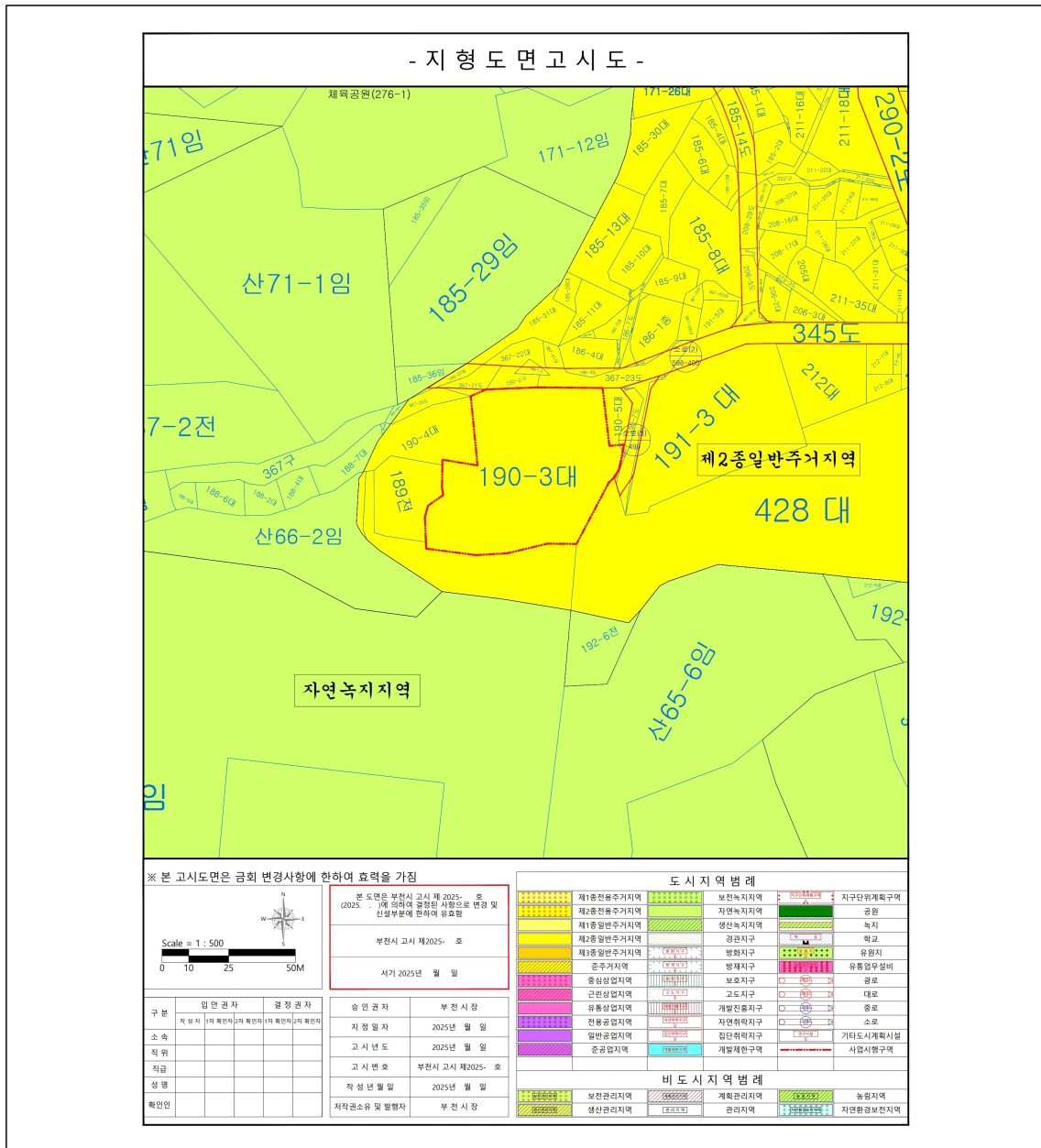
가. 사업시행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표시 번호	사업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-	소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	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90-3	3,436.50	-	-	-

나. 사업시행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위치	면적(m ²)	결정(변경)사유
신설	-	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90-3	3,436.50	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 개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재

□ 붙임 : 지형도면 고시



소관부서	주거정비과	전화번호	032-625-3772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